

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

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1년 9월 16일(목)
행정기획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1. 8. 23. 성북구청장 제출(의안번호376호)

나. 회부일자: 2021. 8. 26.

다. 상정일자: 제2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

【2021. 9. 7. 상정·의결 (원안가결)】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기획재정국장 한재헌)

가. 제안이유

「도로명주소법」이 전면 개정·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
 - 행정안전부 「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」(2021.2.21.)을 반영하여
조례 제명 변경
-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⇒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

-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사항 규정 (안 제2조)
 - 행정안전부의 조례표준안에 따라 도로주소명, 기초번호, 국가기초구역, 국가지점번호, 사물주소 등 주소정보를 확대 사용하기 위한 내용 규정
-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및 광고비용을 규정 (안 제3조 및 제4조)
 -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, 제24조제1항 및 제54조제6항에 따라 건물번호 및 사물주소 부여 또는 변경시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제작비용 산정 기준일과 비용을 구 홈페이지에 고시 (안 제3조)
 - 「도로명주소법」 제25조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 게재할 수 있으며 그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4조)
-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에 관한 사항 (안 제5조)
- “주소정보위원회”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(안 제6조 ~ 12조)
 - 조례 제명의 변경에 따라 위원회의 명칭도 “도로명주소위원회”에 “주소정보위원회”로 변경
 -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
-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 조항을 규정함 (안 제14조)

○ 주소정보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(안 제15조)

-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「도로명주소법」 제33조제2항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,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에 도로명판 설치 등을 안 제15조 각호에 열거된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이병곤)

본 조례안은 「도로명주소법」 전면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도로명 주소체계를 보다 안정화하고 고도화 한 것으로 도로명 주소를 기반으로 지표면 도로에만 2차원의 평면적 주소를 부여하였던 것을 “도로”의 정의 확대를 통하여 고가·지하차도, 육교, 버스 및 택시정류장, 옥외 대피시설 등에도 별도의 사물주소를 부여하여 입체적인 주소부여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도시구조 변화 대응 및 위치안내와 관련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한 것으로 국민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「없음」

5. 토론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의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「없음」